

1. 개정이유

입영판정검사 도입에 따른 입영판정검사를 「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」 적용대상에 추가하고 편평족과 요족 관련 판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입영판정검사를 「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」 적용 대상에 추가
(안 제1조)

입영판정검사 대상자에 대하여 「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」을 적용하여 신체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.

나. 입영판정검사의 신체검사 방법 신설(안 제17조 신설)

병무청이 실시하는 입영판정검사의 신체검사는 「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」 제2장의 검사방법을 준용하도록 함.

다. 입영부대의 장의 입영신체검사 실시 근거 명확화(안 제17조의2)

입영부대의 장이 입영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법 제14조의3제7항으로 변경됨에 따른 입영신체검사 실시 근거를 명확히 함.

라. 편평족 및 요족 판정 기준 조정(안 별표3)

중골경사각(중골피치각)에 따른 편평족과 요족 판정기준 합리적 조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

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확인신체검사”를 “입영판정검사, 확인신체검사”로 한다.

제3장의 제목 “입영등 신체검사”를 “입영판정검사·입영신체검사”로 한다.

제17조를 제17조의2로 하고, 같은 조(중전의 제17조)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다음”을 “입영부대의 장은 다음”으로, “제8조 중 신장·체중에 관한 사항, 제10조”를 “제10조”로, “제외한다)”를 “제외한다)의 검사 방법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,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법 제14조의3제7항에 따른 현역병 입영신체검사 및 군사교육소집
입영신체검사

제17조(입영판정검사) 병무청장은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의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제2장의 검사방법을 준용한다. 다만, 제10조 신장·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은 판정하지 아니한다.

제17조의2(중전의 제17조)의 제목 “(입영 등 신체검사)”를 “(입영신체검사)”로 한다.

별표 3 가목2) 중 “미만이나 30° 이상”을 “미만”으로 하고, 같은 란 나목

1) 중 “30° 이상”을 “27° 이상 30° 미만”으로 하며, 같은 란 2) 중 “수술”을 “요측변형[체중부하 단순방사선 측면사진상 종골경사각(종골피치각)이 30° 이상인 경우] 또는 수술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병역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및 「병역법 시행령」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의 규정에 의한 병역판정 신체검사, 재병역판정검사, <u>확인신체검사</u> , <u>입영신체검사</u> , <u>지원병신체검사</u> , 병역처분변경등(전임된 자에 대한 병역처분변경등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입영일이 연기된 자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<u>입영판정검사, 확인신체검사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<u>제3장 입영등 신체검사</u>	제3장
<u><신 설></u>	<u>입영판정검사·입영신체검사</u>
	<u>제17조(입영판정검사) 병무청장은</u> <u>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입영</u> <u>판정검사의 신체검사에 관하여</u> <u>는 제2장의 검사방법을 준용한</u> <u>다. 다만, 제10조 신장·체중에</u> <u>따른 신체등급은 판정하지 아니</u> <u>한다.</u>
<u>제17조(입영 등 신체검사) ① 다</u>	<u>제17조의2(입영신체검사) ① 입</u>

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제2장 (제8조 중 신장·체중에 관한 사항, 제10조, 제12조 및 제14조는 제외한다)을 준용한다. 다만, 제6조, 제8조 및 제9조에도 불구하고 입영부대의 장은 입영부대의 시설 등을 고려하여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. 1. 법 제17조에 따른 현역병입영신체검사 2. ~ 4. (생략) 5. 법 제56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 입영신체검사 6. (생략) ② (생략)	영부대의 장은 다음 ----- ----- --제10조----- ----- -- 제외한다)의 검사 방법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. 1. 법 제14조의3제7항에 따른 현역병 입영신체검사 및 군사교육소집 입영신체검사 2. ~ 4. (현행과 같음) <삭 제> 6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--	--